

#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416호 2020년 3월 12일(목)

## 경 상 북 도

### ■ 고 시

- 봉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지형도면 및 세목(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87호) .....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대현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치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88호) ..... 20
-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89호) ..... 23

## ■ 공 고

-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30호) ..... 26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위한 입법 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60호) ..... 29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72호) ..... 36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77호) ..... 51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78호) ..... 72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79호) ..... 82
-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80호) ..... 100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95호) ..... 106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96호) ..... 108
-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598호) ..... 110

<b>시    군</b>
---------------

**■ 고 시**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0-27호) ..... 112
- 영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0-45호) ..... 120
- 경산 도시관리계획(남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0-28호) ..... 122

**■ 공 고**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공고 제2020-371호) ..... 135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공고 제2020-372호) ..... 145

- 경산도시계획시설(소로2-41호선, 소로3-9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경산시 공고 제2020-400호) ..... 149
-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청송군 공고 제2020-226호) ..... 155
- 군 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공람·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0-241호) ..... 188

<b>기    타</b>
---------------

**■ 고 시**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79호) ..... 201
- 하천점용(일시)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80호) ..... 202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81호) ..... 203

**■ 공 고**

-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안동소방서 고시 제2020-2호) ..... 205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87호

## 봉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지형도면 및 세목(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고시 제2018-240호(2018.8.13.)로 승인된 봉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의 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함

###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지역·지구 명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역

나. 사 업 명 : 봉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다. 위 치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봉학리 외 2개리 일원

라. 수혜면적 : 105.4ha(보강 : 18.3ha, 기설 : 87.1ha)

마. 사 업 량

- 도수로 2조 989m
  - 봉학도수로(Q=0.23m<sup>3</sup>/sec, D=0.8m, L=874m)
  - 후평도수로(Q=0.01m<sup>3</sup>/sec, B×H=0.5×0.5, L=115m)

### 3. 지형도면

사군	사 업 명	위 치		고시면적 (m <sup>2</sup> )	비고
		기 점	종 점		
칠곡군	봉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가산면 학상리 산26-5	가산면 학상리 산22-12	7,131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4. 사업비 : 1,000백만원

5. 사업 예정기간 : 2018. 8. ~ 2020. 6. 30.

6. 사업의 효과 : 수자원 확보, 관개개선, 영농환경 개선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9. 관계도서 : 게재생략

10.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054-800-50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변 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면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11	필지		7,131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9길 36-11, 105동 608호 (인의동, 청구 하이츠)		송정 세마을 금고 (송정동)	경북 구미시 백산로 70 (송정동)	근저 당권 지상 권설 정
								김인구		
								324		
								324		
								김희경 황규승		칠곡군 산림 조합
								324		
								2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9길 36-11, 105동 608호 (인의동, 청구 하이츠)		송정 세마을 금고 (송정동)	경북 구미시 백산로 70 (송정동)	근저 당권 지상 권설 정
								김인구		
								314		
								30,389		
								김희경 황규승		칠곡군 산림 조합
								324		
								2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9길 36-11, 105동 608호 (인의동, 청구 하이츠)		송정 세마을 금고 (송정동)	경북 구미시 백산로 70 (송정동)	근저 당권 지상 권설 정
								김인구		
								314		
								30,389		
								김희경 황규승		칠곡군 산림 조합
								324		
								2		
								43		
								43		

변 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산26-7	임야	458	458	최재선 최재현 최재영 최사용	주소	성명 또는 명칭	
4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산26-8	임야	1,024	1,024	최재선 최재현 최재영 최사용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당 초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산26-2	임	13,830	1,196	최재선 최재현 최재영 최사용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변 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6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4-8	임 야	564	564	석운홍 장내신 장만호 장상철 장상순 장상필 장서영 장영호 조혜운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 245-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59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585 경남 마산시 석전동 산5-10 경상북도 상주군 증동면 우물리 1140 경상북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미 등 기 압류, 가압 류
4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4	임	149,283	2,804	미등기			



변 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비고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5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6	임	36,000	852	장제덕	대구광역시 서구 북부산로 67길 25-12 (비산동)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6	
6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7	임	22,267	695	이광수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656-9 보성향실 타운2차 103동 405호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7	
8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9	임	881	881	장제덕	대구광역시 서구 북부산로 67길 25-12 (비산동)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9	
9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11	임	511	511	칠곡군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656-9 보성향실 타운2차 103동 405호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11	
10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12	임	451	451	이광수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656-9 보성향실 타운2차 103동 405호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12	근저 당권, 지상 권

변 정										당 초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폐임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상면적(㎡)	폐임면적(㎡)		성명 또는 명칭
11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95-2	목장용지	533	533	칠곡군				11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95-1	임	2,362	406	이광수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656-9 보성황실타운2차 103동 405호			
8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산35-7	임	15,681	166	이용환 이수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7가 259-40	동대구 세무서		8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산35-7	임	15,681	166	이용환 이수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7가 259-40	동대구 세무서		
9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산35-10	임	2,515	171	이용환 이수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7가 259-40	동대구 세무서		9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산35-10	임	2,515	171	이용환 이수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7가 259-40	동대구 세무서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변경)

변 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물권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총계	총계	6									
1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4 -8	밭나무	φ 5 ~10	1	주	식윤홍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245-1			
							장내선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590			
							장만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585			
							장상렬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산5-10			
							장상순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우물리 1140			
							장상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112			
							장서영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112			



변 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물권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소	성명	
							최사용	대구시 서구 비산동 467-5			
							최제선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569			
							최재현	신산군 장천면 상장동 732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6-7	밤나무	φ 5 ~10	2	주	최제영	대구시 서구 비산동 1104-9			
							최사용	대구시 서구 비산동 467-5			
							최제선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569			
							최재현	신산군 장천면 상장동 732			
							최제영	대구시 서구 비산동 1104-9			
							최사용	대구시 서구 비산동 467-5			
당 초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물권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소	성명	
3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산22	무연묘		1	기					

경상북도 고시 제2020 -88호

## 대현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업목적

경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도설치사업을 시행하여 하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경주시청)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면적(㎢)
대현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985-10번지 일원	1,389	450 (증설 150)	증설 ESSA (기존 KIDEA)	2.06

다. 사업시행기간 : 2020~2021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마. 기타 관계서류는 경주시 에코(Eco)-물센터(054-779-880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 지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계						1,389	1,389			
1	경주	산내	대현	1985-1	잡	980	980		경주시	
2	경주	산내	대현	1985-10	답	409	409		경주시	
					이	하	여	백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89호

##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10-181 (2010.5.10.)호로 지정 고시된 『서한엔티엔베어링(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을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변경 사항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생산제품	· 풍력발전용 베어링 제조	· 풍력발전용 베어링 제조 (구름베어링제조업)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3. 변경 사유

- 풍력베어링 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및 선박 부품 제조업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530호

##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시정명령 통지에 대하여 등기우편반송 등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0.3.12. ~ 2020.4.6.(26일간)

2. 공고내용 :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대표이사 최재복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가길 4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li> <li>2. 목적사업 미이행</li> <li>3. 시정명령 위반</li> </ol>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p> <p>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2호 생략)</p> <p>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호 생략)</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p> <p>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p>

### 3. 문의사항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사회복지과(☎ 054-880-3729, FAX 054-88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경상북도 공고 제2020-560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위한 입법 예고****1. 폐지이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19.10.31)으로 시행규칙의 정의,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이용시간, 근무일지 및 비치, 재정보증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그 조치이유가 없어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규칙안 : 붙임**

**3. 의견제출**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산림산업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산림산업관광과

전화 : 054-880-3632 FAX 054-880-3639, 이메일 : sky1332@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존(폐지할) 조례 -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 11. 5.] [경상북도규칙 제2639호, 2009. 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9.11.5〉

1. 관리·운영자 :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장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09.11.5〉
2. 현장 책임자: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이용시간 등) ①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개정'09.11.5〉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동발매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09.11.5〉

③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자

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신설'09.11.5>

1. 자연휴양림 일일 개장 시간은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및 야영장 등(야영장, 야영데크, 오토캠핑장)의 이용자는 제외한다.

2.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

3. 야영장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3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한다.

④ 시설사용권은 제3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신설'09.11.5>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 등은 매표소 입구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09.11.5>

제4조<삭제'09.11.5>

제5조<삭제'09.11.5>

제6조(입장권 인쇄 등) ①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

②관 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사용권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09.11.5>

제7조(근무일지 및 비치보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09.11.5>

제8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09.1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572호**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함

- 선정 대리인을 위촉할 경우 위촉 동의서(별지 제31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2호서식) 서식을 정함(안 제22조)
- 영세한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 서식을 정함(안 제23조)
-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 서식(별지 제34호서식)을 정함(안 제24조)
-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 및 관리(별지 제35호서식) 서식을 정함(안 제25조)

### 3. 개정규칙(안) : 붙임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 054-880-2258 Fax 054-880-2239, 이메일 : nakmoon@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39조제5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관리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경상북도지사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안에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 . . .

위 동의자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 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경상북도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경상북도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 . . .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경상북도지사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기 관 명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귀하

1.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2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p>
<p>〈신 설〉</p>	<p>제23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서)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p>
<p>〈신 설〉</p>	<p>제24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p>
<p>〈신 설〉</p>	<p>제25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39조제5항에 따른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관리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p>

## 관 련 법 령 발 취

##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장 선정대리인

제32조(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3조(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세무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선정대리인 임기) ①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자에 관한 정보보호)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선정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선정대리인의 포상 등)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선정대리인의 실비변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등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2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선정대리인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 2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임기 시작일로 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 577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세 감면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조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1가구 1주택 개념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취득세가 면제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 확대(안 제2조)

- (종전)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개정) 종전 대상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가족관계 및 동거사실이 확인되는 자)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안 제7조)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1. 이후에 조세감면결정 신청 외국투자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대상

다.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1가구 1주택 개념 명확화(안 제14조의2)

- '1가구' 개념 명확화를 위해 괄호를 수정
- '1주택' 을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라. 취득세 추징 시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안 제23조)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국세규정 도입)
-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greenhope@korea.kr

##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1가구 1주택(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를 “1가구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1주택(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u>규정에 의하여</u>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u>규정에 의하여</u>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p> <p>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1. -----                      -----                      ----- 단서에 따라 -----                      -----.</p> <p>2. -----                      -----                      ----- 단서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p>을 경감한다.</p> <p>&lt;신 설&gt;</p> <p>제14조의2(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태아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둔 무</p>	<p>-----.</p> <p>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p> <p>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4조의2(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주택 세대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이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 되는 경우 최초로 취득하는 1개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③ (생 략)</p> <p>제2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생 략)</p> <p>〈신 설〉</p>	<p>----- ----- ----- 1가구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1주택(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p>

현 행	개 정 안
	<p>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 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p>

## 참고

## 관련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다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일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일정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578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세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정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 (종전) 특정부동산분, 특정자원
- (개정) 소방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정비에 따라 제목 수정(제5장제6절)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greenhope@korea.kr

## 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14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146조제1항제6호”를 “법 제146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제6항”으로 한다.

제5장제6절의 제목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146조제4항”을 “법 제146조제5항”으로,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②·③ (생 략)</p> <p>제20조(부과대상 지역) <u>법 제147조제3항</u>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21조(신고 및 납부) <u>법 제147조제1항제2호</u>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u>법 제146조제1항제5호</u>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2조(부과대상 지역) <u>법 제147조제3항</u>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23조(신고 및 납부) <u>법 제147조제1항제2호</u>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u>법 제146조제1항제6호</u>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부과대상 지역) <u>법 제147조제6항</u>----- ----- -----.</p> <p>제21조(신고 및 납부) ----- ----- <u>법 제146조제2항제2호</u>----- ----- ----- ----- -----.</p> <p>제22조(부과대상 지역) <u>법 제147조제6항</u>----- ----- -----.</p> <p>제23조(신고 및 납부) ----- ----- <u>법 제146조제2항제3호</u>-----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p> <p><b>제6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b></p>	<p>제24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 -----.</p> <p><b>제6절 소방분 -----</b></p>
<p>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따른다.</p>	<p>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 소방분 ----- 같은 조 제3항-----.</p>
<p>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p>	<p>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 -.</p>

## 참고

##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 2021.1.1., 법률 제16855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 579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세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안 제3조 및 제8조)
- 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정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문구 수정(안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 (종전) 특정부동산분, 특정자원

- (개정) 소방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다.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정비에 따라 제목 수정(제6장제1절 및 제2절)

라. 별지 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문구 수정(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greenhope@korea.kr

##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8조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세기본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한다.

제20조 중 “조례 제14조”를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22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8조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관리번호	-			<b>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b>			
<input type="checkbox"/> 기한 내 신고 <input type="checkbox"/> 기한 후 신고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법인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소재지)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⑦ 전자우편주소		
<b>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b>							
⑧ 과세대상		⑨ 소재지		⑩ 수량		⑪ 이용기간	
⑫ 과세표준	⑬ 세율	⑭ 산출세액	⑮ 비과세세액	⑯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⑰ 계
	%						
신고세액 합계 (⑭-⑮-⑯+⑰)		원					
「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b>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b>			
성명(법인명)		주소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자	접수일
접수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sup>2</sup>)

(뒷면)

작성 방법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납부 내역란

- ⑧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먹는 물, 온천수, 지하수(기타),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등으로 기재합니다.
- ⑨ 소재지: 발전소, 채수공, 광구, 부두 등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⑩ 수량: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의 이용량, 채수량, 채광량, 발전량 등을 기재하되, 발전용수 및 지하수 등은 00㎥, 지하자원은 00원, 컨테이너는 00TEU, 원자력 발전은 00kWh로 기재합니다.
- ⑪ 이용기간: 해당 과세대상을 이용한 기간, 채수한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기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  
○시군 세무부서 (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시·군)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 소		과 세 물 건	과 세 표 준	세 율	세 액	납부일	결 제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0호서식]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로 처리부

○○년도 ○○월분

(○○시·군)

과세 번호	성명 (법인명)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 략)</p> <p>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 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 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 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 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 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 ----- 제출 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 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를 제출한 자-- 같은 법 ----- -----.</p>
<p><b>제1절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b></p>	<p><b>제1절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b></p>
<p>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라 한다) 신고는 별 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p>	<p>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제20조(과세대장 비치) <u>조례 제14조</u>에 따 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 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역자원시 설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p><b>제2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b></p> <p>제2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과세대장 비치) <u>조례 제15조</u>----- ----- ----- ----- -----.</p> <p><b>제2절 소방분</b> -----</p> <p>제2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 ----- <u>소방분</u> ----- ----- ----- -----.</p>

## 참고

## 관련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

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제16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

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 2021.1.1., 법률 제16855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5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580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세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 명칭 변경(안 4조)

- (종전) 지방세정보통신망 → (개정)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나. 사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따라 심사청구 관련 문구 수정(안 제14조)

-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 폐지
-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 단순화

다. 별지 서식의 심사청구 관련 문구 수정(별지 제11호서식)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greenhope@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이의신청” 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 심사청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제11호서식]

## 행정 기관 명

수신자

제 목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납세자번호						
	주 소									
	상 호									
년도 기분	세 목	당 초 결 정		취소(경정)결정		차 인 액		감 액 결정일	비 고	
		과 표	세 액	과 표	세 액	과 표	세 액			

끝.

시 장 ·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과세 대장 등의 작성·비치)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비치·저장하고 <u>지방세정보통신망</u>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4조(과세 대장 등의 작성·비치) ----- ----- -----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 -----</p>
<p>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u>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u>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 ----- <u>이의신청</u>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 참고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시행 2022.2.3., 법률 제16854호, 2019.12.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 2021.1.1., 법률 제16854호, 2019.12.31., 일부개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595호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 전기사업개요
  - 허 가 번 호 : 2016-101호
  - 사업의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 설 비 용 량 : 1,996.6kW
  - 허 가 일 자 : 2016년 11월 28일
  - 설 치 장 소 :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산156(토지)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비고
업 체 명	(주)가온이앤씨	골드에너지(주)	
대 표 자	김 태 식	박 상 균	
주 소	경북 영주시 장수면 용주로 288-98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번지,4층(사동)	
양수예정일	2020년 3월(양도·양수계약 : ' 20.02)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596호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 전기사업개요

- 허 가 번 호 : 2016-102호
- 사업의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 설 비 용 량 : 1,996.6kW
- 허 가 일 자 : 2016년 11월 28일
- 설 치 장 소 :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산155-1(토지)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비고
업 체 명	무들태양광발전소	골드팔금8호(유)	
대 표 자	김 태 식	박 수 범	
주 소	경북 영주시 장수면 용주로 288-98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번지,4층(사동)	
양수예정일	2020년 3월(양도·양수계약 : ' 20.02)		

경상북도 공고 제2020-598호

##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된 부동산개발업을 「같은 법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운승개발 대표 장문기
2. 말 소 일 자 : 2020.3.10.
3. 등 록 번 호 : 경북150021호
4. 주영업소소재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12-1
5. 폐 업 사 유 :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끝.



시      군

고      시

김천시 고시 제2020 - 27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김 천 시 장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군도	17호선	남면~아포	9,752	아포읍 대성리 산158-7	아포읍 대성리 816-1		0.89
변경	군도	17호선	남면~아포	9,779	아포읍 대성리 산158-7	아포읍 대성리 816-1		0.8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면 오봉~아포 대성(군도17호) 도로확포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4 ~ 2020.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 03. 10. ~ 2020. 03. 24(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420-6336)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첨부서류

1.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 편입용지(변경)조서

구분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 예정 면적 (㎡)	토지 소유자 (등기부등본)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기정		아포	대성	816-1	천	82,656	1,684	(국토교통부)	국	
변경	1	아포	대성	816-1	천	82,656	1,684	(국토교통부)	국	
기정		아포	대성	492-2	도	16	9	(금릉군)	공	
변경	2	아포	대성	492-2	도	16	9	(금릉군)	공	
기정		아포	대성	828	도	578	15	(국토교통부)	국	
변경	3	아포	대성	828	도	578	15	(국토교통부)	국	
기정		아포	대성	487-2	도	7	7	(금릉군)	공	
변경	4	아포	대성	487-2	도	7	7	(금릉군)	공	
기정		아포	대성	487-4	대	14	14	구미시 수점동 385	박진영	
변경	5	아포	대성	487-4	대	14	14	구미시 수점동 385	박진영	
기정		아포	대성	487-3	도	23	21	(금릉군)	공	
변경	6	아포	대성	487-3	도	23	21	(금릉군)	공	
기정		아포	대성	486-2	도	23	6	(금릉군)	공	
변경	7	아포	대성	486-2	도	23	6	(금릉군)	공	
기정		아포	대성	829	구	1,954	89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8	아포	대성	829	구	1,954	89	(농림축산식품부)	국	
기정		아포	대성	485-2	답	74	74	(김천시)	공	
변경	9	아포	대성	485-2	답	74	74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884	구	843	123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10	아포	대성	884	구	843	123	(농림축산식품부)	국	

구분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 예정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기정		아포	대성	831	도	60	6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1	아포	대성	831	도	60	60	(국토교통부)	국	
기정		아포	대성	538-2	답	214	191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7-3,501호 (송정동,수석빌딩)	정홍진	
변경	12	아포	대성	538-2	답	214	214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7-3,501호 (송정동,수석빌딩)	정홍진	
기정		아포	대성	541-2	도	149	93	(금릉군)	공	
변경	13	아포	대성	541-2	도	149	93	(금릉군)	공	
기정		아포	대성	541-5	창	24	12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474	양경숙	
변경	14	아포	대성	541-5	창	24	12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474	양경숙	
기정		아포	대성	541-7	창	5	1	(김천시)	공	
변경	15	아포	대성	541-7	창	5	1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41-8	답	4	4	(김천시)	공	
변경	16	아포	대성	541-8	답	4	4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41-6	답	10	10	(김천시)	공	
변경	17	아포	대성	541-6	답	10	10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39-2	답	25	3	(김천시)	공	
변경	18	아포	대성	539-2	답	25	3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39-1	답	244	226	(김천시)	공	
변경	19	아포	대성	539-1	답	244	226	(김천시)	공	

구분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 예정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기정		아포	대성	540-1	답	173	169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7-3,501호 (송정동,수석빌딩)	정홍진	
변경	20	아포	대성	540-1	답	173	173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7-3,501호 (송정동,수석빌딩)	정홍진	
기정		아포	대성	546-3	도	33	19	(금릉군)	공	
변경	21	아포	대성	546-3	도	33	19	(금릉군)	공	
기정		아포	대성	550-1	답	138	138	(김천시)	공	
변경	22	아포	대성	550-1	답	138	138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832	도	3,669	2,382	(국토교통부)	국	
변경	23	아포	대성	832	도	3,669	2,382	(국토교통부)	국	
기정		아포	대성	551-2	도	7	7	(금릉군)	공	
변경	24	아포	대성	551-2	도	7	7	(금릉군)	공	
기정		아포	대성	551-3	답	195	195	(김천시)	공	
변경	25	아포	대성	551-3	답	195	195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52-1	답	26	24	(김천시)	공	
변경	26	아포	대성	552-1	답	26	24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70-3	전	11	6	(김천시)	공	
변경	27	아포	대성	570-3	전	11	6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70-4	전	75	75	(김천시)	공	
변경	28	아포	대성	570-4	전	75	75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54-1	답	27	27	(김천시)	공	
변경	29	아포	대성	554-1	답	27	27	(김천시)	공	

구분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 예정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기정		아포	대성	568-6	전	31	31	(김천시)	공	
변경	30	아포	대성	568-6	전	31	31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8-5	전	11	7	아포읍 대성리21	이덕수	
변경	31	아포	대성	568-5	전	11	7	아포읍 대성리21	이덕수	
기정		아포	대성	568-7	전	14	3	(김천시)	공	
변경	32	아포	대성	568-7	전	14	3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71-3	전	17	8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272-3	임원자	
변경	33	아포	대성	571-3	전	17	8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272-3	임원자	
기정		아포	대성	567-4	목	56	43	(김천시)	공	
변경	34	아포	대성	567-4	목	56	43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56-4	답	50	50	(김천시)	공	
변경	35	아포	대성	556-4	답	50	50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56-3	대	33	12	(김천시)	공	
변경	36	아포	대성	556-3	대	33	12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56-2	답	20	4	(김천시)	공	
변경	37	아포	대성	556-2	답	20	4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6-1	임	412	398	(김천시)	공	
변경	38	아포	대성	566-1	임	412	398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5-3	임	126	126	(김천시)	공	
변경	39	아포	대성	565-3	임	126	126	(김천시)	공	

구분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 예정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기정		아포	대성	565-4	임	90	90	(김천시)	공	
변경	40	아포	대성	565-4	임	90	90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0-1	임	67	67	(김천시)	공	
변경	41	아포	대성	560-1	임	67	67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1-4	답	68	55	(김천시)	공	
변경	42	아포	대성	561-4	답	68	55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833	도	238	222	(국토교통부)	국	
변경	43	아포	대성	833	도	238	222	(국토교통부)	국	
기정		아포	대성	561-3	창	8	3	(김천시)	공	
변경	44	아포	대성	561-3	창	8	3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1-2	도	11	10	(김천시)	공	
변경	45	아포	대성	561-2	도	11	10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2-4	전	136	98	(김천시)	공	
변경	46	아포	대성	562-4	전	136	98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562-3	전	276	210	(김천시)	공	
변경	47	아포	대성	562-3	전	276	210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43-3	전	42	34	(김천시)	공	
변경	48	아포	대성	643-3	전	42	34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43-2	대	166	136	(김천시)	공	
변경	49	아포	대성	643-2	대	166	136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42-2	전	165	144	(김천시)	공	
변경	50	아포	대성	642-2	전	165	144	(김천시)	공	

구분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 예정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기정		아포	대성	644-2	전	215	177	(김천시)	공	
변경	51	아포	대성	644-2	전	215	177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45-2	전	253	190	(김천시)	공	
변경	52	아포	대성	645-2	전	253	190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46-2	전	267	206	(김천시)	공	
변경	53	아포	대성	646-2	전	267	206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48-2	전	154	139	(김천시)	공	
변경	54	아포	대성	648-2	전	154	139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49-3	대	547	487	(김천시)	공	
변경	55	아포	대성	649-3	대	547	487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851	도	478	155	(국토교통부)	국	
변경	56	아포	대성	851	도	478	155	(국토교통부)	국	
기정		아포	대성	650-5	대	72	62	(김천시)	공	
변경	57	아포	대성	650-5	대	72	62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650-4	전	474	397	(김천시)	공	
변경	58	아포	대성	650-4	전	474	397	(김천시)	공	
기정		아포	대성	산158-7	임	933	504	(김천시)	공	
변경	59	아포	대성	산158-7	임	933	504	(김천시)	공	
기정		합 계				96,707	9,752			
변경		합 계				96,707	9,779			

영천시 고시 제2020 - 45호

## 영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망정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12.

### 영 천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망 정 배수지	영천시 망정동 산14-5번지 일원	7,843.56	감)215.88	7,627.68	영천시고시 제2019-104호 (2019.10.24.)	분할 측량 (선형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054-3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0-28호

## 경산 도시관리계획(남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남매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산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가. 공원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남매공원	근린공원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계양동 일원	586,717	-	586,717	건교부고시 제576호 (1969.9.29)

##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총 계	586,717	6,148.53	100.0	586,717	5,948.53	100.0		
시 설 종 류	소계	200,090	6,148.53	34.1	187,634	5,948.53	32.0	감)12,456㎡
	도로	30,743	-	5.3	32,975	-	5.6	증)2,232㎡
	조경시설	56,330	-	9.6	56,902	-	9.7	증)572㎡
	휴양시설	9,724	556.72	1.6	8,295	556.72	1.4	감)1,429㎡
	유희시설	7,570	35.00	1.3	7,002	35.00	1.2	감)568㎡
	운동시설	25,928	3,000.00	4.4	19,312	2,800.00	3.3	감)6,616㎡
	교양시설	27,558	2,252.81	4.7	27,665	2,252.81	4.7	증)107㎡
	편익시설	33,040	304.00	5.6	28,667	304.00	4.9	감)4,373㎡
	교통시설	9,197	-	1.6	6,816	-	1.2	감)2,381㎡
녹지	386,627	-	65.9	399,083	-	68.0	증)12,456㎡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도로총괄조서

구 분	폭원 (m)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41	72	9,079	11,636	30,743	32,975	
중로 1류	20	1	-	68	-	1,406	-	
중로 2류	1~18	1	1	200	220	1,392	1,550	
소로 1류	10	1	-	140	-	1,449	-	
소로 2류	8	1	3	181	481	1,448	4,112	

구 분	폭원 (m)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로 3류	6	1	-	199	-	1,194	-	
	5	1	-	157	-	785	-	
	4	11	7	2,386	1,618	8,872	5,729	
	3~5	-	1	-	30	-	230	
	3	12	15	3,387	3,885	10,220	11,712	
	2.5	1	3	90	580	225	1,454	
	2	-	6	-	424	-	863	
	2.0~3.0	1	1	464	464	1,175	1,175	
	1.5~6.0	-	1	-	202	-	572	
	1.5	7	31	1,117	3,042	1,724	4,725	
	1.2	3	3	690	690	853	853	

## ○ 도로세부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기정	계				9,079	30,743				
변경	계				11,636	32,975				
기정	중로	1	1	20	68	1,406	주진입로	중방동791-1	중방동783-6	
폐지	중로	1	1	20	68	1,406	주진입로	중방동791-1	중방동783-6	
기정	중로	2	1	4~15	200	1,392	원내간선로	삼북동12-8	삼북동10	
변경	중로	2	1	1~18	220	1,550	원내간선로	삼북동12-8	삼북동12-3	
기정	소로	1	1	10	140	1,449	원내보조간선	중방동784-12	중방동759-2	
폐지	소로	1	1	10	140	1,449	원내보조간선	중방동784-12	중방동759-2	
기정	소로	2	1	8	181	1,448	원내보조간선	계양동477-2	중방동802-75	
신설	소로	2	2	8	72	671	주진입로	중방동802-72	중방동1-1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1	3	496	1,508	산책로	중방동121-1	계양동231-2	
기정	소로	3	2	4	21	85	산책로	중방동688-17	중방동688-17	
기정	소로	3	3	3	197	590	산책로	중방동690-5	중방동688-16	
기정	소로	3	4	3	59	177	산책로	중방동687	중방동688-16	
기정	소로	3	5	5	157	785	산책로	중방동784-2	중방동773-3	
변경	소로	3	5	1.5	100	162	산책로	중방동784-2	중방동773-3	
기정	소로	3	6	4	21	85	산책로	중방동687	중방동688-14	
기정	소로	3	7	4	157	628	산책로	중방동658-3	중방동699-7	
기정	소로	3	8	4	60	257	산책로	중방동701-14	중방동700	
기정	소로	3	9	4	523	2,092	산책로	중방동797-3	중방동784-10	
변경	소로	3	9	1.5	362	543	산책로	중방동797-3	중방동773-3	
기정	소로	3	10	4	39	156	산책로	삼북동12-3	삼북동7-2	
변경	소로	3	10	1.5	264	397	산책로	삼북동10	삼북동8	
기정	소로	3	11	4	56	224	산책로	중방동773-3	중방동773-3	
변경	소로	3	11	1.5	52	83	산책로	중방동773-3	중방동773-3	
기정	소로	3	12	3	67	202	산책로	중방동744	중방동784-3	
변경	소로	3	12	3	47	142	산책로	중방동784-11	중방동784-3	
기정	소로	3	13	4	44	176	산책로	중방동811-3	중방동742	
변경	소로	3	13	3	154	460	산책로	중방동811-3	중방동743-5	
기정	소로	3	14	3	295	889	산책로	계양동642	계양동567-5	
기정	소로	3	15	3	160	480	산책로	계양동567-5	계양동567-5	
기정	소로	3	16	3	59	199	산책로	계양동567-5	계양동567-5	
기정	소로	3	17	1.5	37	56	산책로	중방동686-2	중방동686-16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18	1.5	17	26	산책로	중방동682-1	중방동682-3	
변경	소로	3	18	1.5	36	55	산책로	중방동682-1	중방동682-1	
기정	소로	3	19	3	106	319	산책로	중방동686-1	중방동682-10	
기정	소로	3	20	2.0~3.0	464	1,175	산책로	계양동231-2	계양동200-2	
기정	소로	3	21	3	1,076	3,242	산책로	계양동200-4	중방동 703-8	
기정	소로	3	22	1.5	46	69	산책로	중방동690-4	중방동690-5	
기정	소로	3	23	3	15	45	산책로	계양동465-2	계양동465-2	
기정	소로	3	24	2.5	90	225	산책로	계양동642	계양동501-2	
기정	소로	3	25	3	469	1,405	자전거도로	계양동231-2	계양동200-2	
기정	소로	3	26	1.2	335	413	산책로	계양동463-20	계양동413-2	
기정	소로	3	27	4	1,100	3,864	자전거도로	계양동200-4	중방동802-84	
기정	소로	3	28	1.2	327	402	산책로	계양동463-20	계양동463-19	
기정	소로	3	29	1.2	28	38	산책로	계양동463-19	계양동463-19	
기정	소로	3	30	1.5	483	822	자전거도로	중방동702-4	중방동116-5	
변경	소로	3	30	1.5	483	824	자전거도로	중방동702-4	중방동116-5	
기정	소로	3	31	1.5	480	665	산책로	중방동711-1	중방동116-5	
변경	소로	3	31	1.5	483	667	산책로	중방동702-4	중방동116-5	
기정	소로	3	32	3	388	1,164	산책로	계양동246-15	계양동116-1	
변경	소로	3	32	3	383	1,149	산책로	계양동246-15	계양동116-1	
신설	소로	3	33	2	158	317	산책로	계양동297-2	계양동258-3	
신설	소로	3	34	2.5	251	628	산책로	계양동300-4	계양동231-2	
신설	소로	3	35	2	150	301	산책로	계양동297-2	중방동116-2	
신설	소로	3	36	2.5	239	601	산책로	계양동300-4	중방동121-1	
기정	소로	3	37	6	199	1,194	원내보조간선	중방동779-1	중방동780-3	
변경	소로	2	3	8	228	1,993	원내보조간선	중방동799-3	중방동784-3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38	1.5	27	45	자전거도로	중방동708-5	중방동711-1	
기정	소로	3	39	1.5	27	41	산책로	중방동708-5	중방동711-1	
기정	소로	3	40	4	137	620	산책로	중방동742	중방동744-2	
변경	소로	3	40	1.5	99	149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44-2	
기정	소로	3	41	4	228	685	산책로	계양동642	계양동567-5	
신설	소로	3	42	3	344	1,032	산책로	중방동764	중방동802-72	
신설	소로	3	43	1.5	41	61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58-3	
신설	소로	3	44	1.5	20	31	산책로	중방동758-1	중방동758-1	
신설	소로	3	45	1.5	58	88	산책로	중방동811-3	중방동773-3	
신설	소로	3	46	1.5	43	70	산책로	중방동773-3	중방동760	
신설	소로	3	47	1.5	29	45	산책로	중방동775-2	중방동775-1	
신설	소로	3	48	1.5	51	95	산책로	삼북동11-3	삼북동12-1	
신설	소로	3	49	3~5	30	230	산책로	중방동783-6	중방동784-4	
신설	소로	3	50	3	25	75	산책로	중방동784-4	중방동784-3	
신설	소로	3	51	1.5~6	202	572	산책로	중방동784-12	중방동792-4	
신설	소로	3	52	1.5	55	84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42	
신설	소로	3	53	1.5	20	30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43-5	
신설	소로	3	54	1.5	45	70	산책로	중방동782-2	중방동775-2	
신설	소로	3	55	1.5	32	95	산책로	중방동792-3	중방동784-28	
신설	소로	3	56	2	80	163	산책로	계양동246-3	계양동231-2	
신설	소로	3	57	2	9	22	산책로	계양동258-3	계양동249-5	
신설	소로	3	58	2	10	22	산책로	계양동255-3	계양동255-3	
신설	소로	3	59	4	31	125	산책로	계양동300-4	계양동301-5	
신설	소로	3	60	2	17	38	산책로	중방동120-4	중방동116-2	
신설	소로	3	61	1.5	182	273	산책로	중방동683-2	중방동682-1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신설	소로	3	62	1.5	127	196	산책로	중방동683-2	중방동682-10	
신설	소로	3	63	1.5	47	73	산책로	중방동682-11	중방동682-10	
신설	소로	3	64	1.5	33	52	산책로	중방동682-1	중방동684-1	
신설	소로	3	65	1.5	100	155	산책로	중방동683-1	중방동682-1	
신설	소로	3	66	1.5	65	100	산책로	중방동683-2	중방동682-1	
신설	소로	3	67	1.5	46	68	산책로	중방동682-1	중방동683-1	
신설	소로	3	68	1.5	22	33	산책로	중방동683-1	중방동683-4	
신설	소로	3	69	1.5	10	15	산책로	중방동683-4	중방동683-3	

■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586,717	6,148.53	13,522.69		
		변경		586,717	5,948.53	13,322.69		감)200㎡
시설면적		기정		200,090				
		변경		187,634				감)12,456㎡
1.도로								
기정		계	9,079	30,743				
변경		계	11,636	32,975				증)2,232㎡
2.조경시설								
기정		소계		56,330				
변경		소계		56,902				감)572㎡
기정	2	야외결혼식장 및 잔디광장	중방동764일원	6,440				
변경	2	소풍마당	중방동764일원	6,055				감)385㎡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3	가로휴게광장	삼북동21-2일원	2,100				
변경	3	가로휴게광장	삼북동21-2일원	3,057				증)957㎡
	4	가로공원		4,031				
기정	4-1	가로공원	계양동463-11일원	2,494				
기정	4-2	가로공원	중방동688-17일원	1,311				
기정	4-3	가로공원	계양동515-7일원	226				
기정	5	벽천	계양동639-12일원	50				
기정	6	프로그램음악 분수	계양동325일원	3,043				
기정	7	생태관찰마당	계양동470-7일원	129				
기정	34	광장	중방동777-3	3,411				
기정	37	습지	중방동686-3일원	3,663				
기정	38	자연마당	중방동685-3일원	21,196				
기정	39	수생식물생태 관찰장	계양동463-1일원	12,267				
3.휴양시설								
기정		소계		9,724	556.72	1,033.48		
변경		소계		8,295	556.72	1,033.48		감)1,429㎡
	8	휴게쉼터	(기정)	78				
	8	휴게쉼터	(변경)	489				증)411㎡
기정	8-1	휴게쉼터	계양동294-3일원	39				
변경	8-1	휴게쉼터	계양동299-3일원	71				증)32㎡
기정	8-2	휴게쉼터	계양동257-3일원	39				
변경	8-2	휴게쉼터	계양동255-3일원	90				증)51㎡
신설	8-3	휴게쉼터	계양동120-4	58				신설
신설	8-4	휴게쉼터	계양동254-3	63				신설
신설	8-5	휴게쉼터	계양동255-5일원	18				신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신설	8-6	휴게쉼터	중방동682-11일원	65				신설
신설	8-7	휴게쉼터	중방동683-2일원	30				신설
신설	8-8	휴게쉼터	중방동683-1일원	31				신설
신설	8-9	휴게쉼터	중방동683-1	25				신설
신설	8-10	휴게쉼터	중방동682-14	38				신설
9		노인시설		1,970	306.72	783.48		
기정	9-1	노인정	중방동658-1일원	1,320	206.72	583.48		
기정	9-2	경로당	중방동658일원	650	100.00	200.00		
기정	10	휴게소	중방동688-14일원	978	250.00	250.00		
11		휴게광장	(기정)	6,698				
11		휴게광장	(변경)	4,858				감)1,840㎡
기정	11-2	휴게광장	중방동749-2일원	810				
변경	11-2	휴게광장	중방동793-2일원	172				감)638㎡
기정	11-3	휴게광장	중방동744-2일원	550				
변경	11-3	휴게광장	중방동744-2일원	682				증)132㎡
기정	11-4	휴게광장	중방동746일원	500				
기정	11-5	휴게광장	계양동463-19일원	66				
기정	11-6	휴게광장	계양동463-19일원	72				
기정	11-7	휴게광장	계양동463-20일원	30				
기정	11-8	휴게광장	계양동518-4일원	136				
기정	11-9	휴게광장	계양동461-2일원	74				
기정	11-10	휴게광장	계양동463-21일원	73				
기정	11-11	휴게광장	계양동192일원	531				
기정	11-12	휴게광장	중방동743-5일원	2,373				
변경	11-12	휴게광장	중방동742일원	550				감)1,823㎡
기정	11-13	휴게광장	계양동525일원	1,483				
신설	11-14	휴게광장	계양동758-3일원	192				신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신설	11-15	휴게광장	계양동780-2일원	179				신설
신설	11-16	휴게광장	계양동784-11일원	118				신설
4. 유희시설								
기정	소계			7,570	35.00	35.00		
변경	소계			7,002	35.00	35.00		감)568㎡
기정	12	오감체험장		586				
기정	13	어린이놀이터	중방동682-1일원	3,602				
변경	13	어린이놀이터	중방동682-1일원	1,586				감)2,016㎡
기정	14	물놀이마당	중방동703-8일원	3,382	35.00	35.00		
신설	41	어린이놀이마당	중방동796일원	1,448				신설
5. 운동시설								
기정	소계			25,928	3,000.00	4,300.00		
변경	소계			19,312	2,800.00	4,100.00		감)6,616㎡
기정	15	수영장	상방동2-1일원	13,425	2,700.00	4,000.00	2층	
	16	테니스장	(기정)	10,770	300.00	300.00		
	16	테니스장	(변경)	3,180	100.00	100.00		감)7,590㎡
기정	16-1	테니스장	중방동701-5일원	3,180	100.00	100.00		
기정	16-2	테니스장	중방동794일원	3,540	100.00	100.00		
폐지	16-2	테니스장	중방동794일원	3,540	100.00	100.00		폐지
기정	16-3	테니스장	중방동793-1일원	4,050	100.00	100.00		
폐지	16-3	테니스장	중방동793-1일원	4,050	100.00	100.00		폐지
기정	17	배드민턴장	중방동796일원	1,350				
변경	17	다목적운동마당	중방동794일원	2,324				증)974㎡
	18	주민운동마당		383				
기정	18-2	주민운동마당	계양동231-2일원	145				
기정	18-3	주민운동마당	계양동413-2원	73				
기정	18-4	주민운동마당	계양동475-6일원	165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6. 교양시설								
기정	소계			27,558	2,252.81	7,750.21		
변경	소계			27,665	2,252.81	7,750.21		증)107㎡
기정	19	도서관	계양동478-3일원	6,723	1,339.81	6,209.21		
기정	20	전통예절교육관	중방동760일원	8,595	631.00	631.00		
변경	20	전통예절교육관	중방동760일원	8,430	631.00	631.00		감)165㎡
기정	21	교양회관	중방동750-2일원	1,420	282.00	910.00		
기정	22	조각공원	중방동685-1일원	3,788				
기정	23	청소년놀이마당	중방동700일원	1,368				
기정	24	세계연꽃식물원	계양동463-1일원	1,151				
기정	25	생태관찰데크	계양동470-6일원	387				
기정	26	수상데크로드	계양동463-1일원	2,594				
기정	27	수변데크	계양동254-3일원	967				
기정	40	야외공연장	계양동464일원	565				
신설	42	작은초화원	중방동782-1	272				신설
7. 편익시설								
기정	소계			33,040	304.00	404.00		
변경	소계			28,667	304.00	404.00		감)4,373㎡
기정	28	목교	계양동121-1	58				
	29	전망대		530	100.00	200.00		
기정	29-1	전망대	계양동567-5일원	530	100.00	200.00		
기정	30	운영실	계양동466-1	205	170.00	170.00		
	31	주차장	(기정)	32,163				
	31	주차장	(변경)	27,790				감)4,373㎡
기정	31-1	주차장	계양동246-3일원	809				
기정	31-2	주차장	중방동697-3일원	14,012				
기정	31-3	주차장	중방동712-7일원	1,572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31-4	주차장	중방동784-3일원	5,640				
변경	31-4	주차장	중방동793-1일원	1,267				감)4,373㎡
기정	31-5	주차장	계양동567-3일원	6,570				
기정	31-6	주차장	계양동752일원	1,720				
기정	31-7	주차장	계양동477-2일원	1,200				
기정	31-8	주차장	중방동772-2일원	640				
기정	32	휴게음식점	중방동704-1일원	60	25.00	25.00		
기정	33	화장실	계양동518-4일원	24	9.00	9.00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도서 : 별첨(계재생략)

3.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5) 및 산림녹지과(053-810-52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영천시 공고 제2020 - 371호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142-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2.

영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람장소 : 영천시 도시계획과 (☎ 054-330-6592)

###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142-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금호 덕성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63)중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금호 덕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라. 사업의 내용

- 1) 사업량 : 도로개설 B=10.0m, L=500.0m (소로2류163호선)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영천시장
-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5.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공람장소에 비치)

아.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면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1	영천시	교대리	414-1	도	514	33	영천시	국				
2	영천시	교대리	440	도	767	9	농림축산 식품부	국				
3	영천시	교대리	441-3	답	43	1	김종선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441-2				
4	영천시	교대리	10-26	구	49531	25	농림축산 식품부	국				
5	영천시	교대리	222-2	도	496	123	국토교통부	국				
6	영천시	교대리	222-19	도	498	61	국토교통부	국				
7	영천시	교대리	655-5	구	24	24	농림축산 식품부	국				
8	영천시	교대리	655-6	구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국				
9	영천시	교대리	655-7	철	37	8	농림축산 식품부	국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10	영천시	교대리	243-4	도	71	73	국토교통부	국				
11	영천시	교대리	243-6	도	41	41	국토교통부	국				
12	영천시	교대리	222-26	철	942	16	국토교통부	국				
13	영천시	교대리	222-27	철	139	40	국토교통부	국				
14	영천시	덕성리	255-8	구	17	13	농림축산 식품부	국				
15	영천시	덕성리	255-11	구	32	27	농림축산 식품부	국				
16	영천시	덕성리	128-24	도	29	29	국토교통부	국				
17	영천시	덕성리	128-28	철	441	97	국토교통부	국				
18	영천시	덕성리	128-1	도	287	281	국토교통부	국				
19	영천시	덕성리	142-8	대	169	3	조용	대구동구신천동5 24-2				
20	영천시	덕성리	142-4	대	210	55	최재호	부산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27, 110동 1701호 (신호동, 부산신호 사랑으로부영1차)	하양 새마을 금고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99	근저당권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21	영천시 덕성리	142-11	대	21	21	최재호	부산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27, 110동 1701호 (신호동, 부산신호 사랑으로부영1차)	하양 새마을 금고	경상북도 영산시 하양읍 하양로 99	근저당권		
22	영천시 덕성리	128-23	도	88	25	국토교통부	국					
23	영천시 덕성리	142-6	대	87	39	김봉조	영천군 금호읍 덕성리 191					
24	영천시 덕성리	142-12	대	52	52	영천시	국					
25	영천시 덕성리	255-2	구	598	10	농림축산 식품부	국					
26	영천시 덕성리	254-1	도	810	274	건설교통부	국					
27	영천시 덕성리	163-3	대	32	32	임인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456-9 초롱빌라 가-101					
28	영천시 덕성리	163-4	대	15	15	임인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456-9 초롱빌라 가-101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9	영천시 덕성리	162	대	363	51	김옥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 46					
30	영천시 덕성리	162-1	대	54	54	영천시	국					
31	영천시 덕성리	161	대	285	33	이순경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40, 401동 204호(봉무동, 이시아폴리스더 샵4차)					
32	영천시 덕성리	161-1	대	13	13	기획재정부	국					
33	영천시 덕성리	171	대	264	36	김상근	부산 남구 우암동 67 동일아파트 3동 202호					
34	영천시 덕성리	172	대	261	25	김순화	경상북도 경산시 외촌면 동강2길 22					
35	영천시 덕성리	144-16	도	550	7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6	영천시	덕성리	160-1	답	63	63	서병국	대구부 남정131					미등 기
37	영천시	덕성리	144-1	도	191	143	국토교통부	국					
38	영천시	덕성리	159-1	대	17	17	영천시	국					
39	영천시	덕성리	159-3	대	23	23	이정선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앵기길 64-9, 103동 401호(전원빌라)					
40	영천시	덕성리	159-10	대	60	60	영천시	국					
41	영천시	덕성리	159-4	대	61	40	국토교통부	국					
42	영천시	덕성리	159-7	대	28	28	국토교통부	국					
43	영천시	덕성리	159-5	대	18	4	임대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35, 105동 705호(화산동, 우방청운타운)					
44	영천시	덕성리	159-8	대	12	12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45	영천시 덕성리	159-6	대	54	13	구본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 20, 102동 808호(금호우방 타운)				
46	영천시 덕성리	159-9	대	39	39	국토교통부	국				
47	영천시 덕성리	158-1	답	65	10	구본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 20, 102동 808호(금호우방 타운)				
48	영천시 덕성리	158-9	답	27	27	국토교통부	국				
49	영천시 덕성리	158-8	답	23	23	최병일	영천군 금호읍 덕성리 158-6				
50	영천시 덕성리	158-13	답	83	83	국토교통부	국				
51	영천시 덕성리	158-17	답	5	5	최병일	영천군 금호읍 덕성리 158-6				
52	영천시 덕성리	158-7	답	68	1	구본일	영천군 금호읍 덕성리 193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53	영천시	덕성리	158-16	답	2	2	영천시	국				
54	영천시	덕성리	158-12	답	26	20	국토교통부	국				
55	영천시	덕성리	158-10	대	61	51	국토교통부	국				
56	영천시	덕성리	158-14	대	13	8	영천시	국				
57	영천시	덕성리	158-15	진	22	6	영천시	국				
58	영천시	덕성리	158-11	진	60	60	국토교통부	국				
59	영천시	덕성리	215-48	도	34	19	농림축산 식품부	국				
60	영천시	덕성리	254-20	도	3	3	건설교통부	국				
61	영천시	덕성리	215-47	답	157	90	국토교통부	국				
62	영천시	덕성리	195-20	도	61	61	국토교통부	국				
63	영천시	덕성리	215-85	답	174	86	국토교통부	국				
64	영천시	덕성리	195-20	도	61	182	국토교통부	국				
65	영천시	덕성리	215-57	답	2	2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66	영천시	덕성리	215-84	답	145	59	국토교통부	국				
67	영천시	덕성리	215-56	답	21	21	국토교통부	국				
68	영천시	덕성리	215-82	답	131	39	국토교통부	국				
69	영천시	덕성리	215-54	답	37	37	국토교통부	국				
70	영천시	덕성리	215-83	답	146	32	국토교통부	국				
71	영천시	덕성리	215-55	답	60	60	국토교통부	국				
72	영천시	덕성리	215-81	답	468	33	국토교통부	국				
73	영천시	덕성리	215-46	답	322	294	국토교통부	국				
74	영천시	덕성리	215-45	도	36	24	농림축산 식품부	국				
75	영천시	덕성리	215-44	구	20	12	농림축산 식품부	국				
76	영천시	덕성리	215-43	답	196	110	국토교통부	국				
77	영천시	덕성리	215-78	답	151	7	국토교통부	국				
78	영천시	덕성리	215-86	답	341	40	국토교통부	국				
79	영천시	덕성리	215-74	답	137	15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공고 제2020 - 372호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야사동 173-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2.

영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람장소 : 영천시 도시계획과 (☎ 054-330-6592)

###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야사동 173-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동부교회 뒤 도시계획도로(소로3-245)중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동부교회 뒤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내용

- 1) 사업량 : 도로개설 B=6.0m, L=55.0m (소로3류245호선)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영천시장
-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2.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공람장소에 비치)

아.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영천 시	야사 동	173- 13	대	43	43	김승배(1/2) 이관형(1/2)	대구 달서구 송현동 798-119 대구 북구 검단동 503-4				
2	영천 시	야사 동	173- 15	대	40	40	권영직	영천시 야사동 173-8				
3	영천 시	야사 동	173- 14	대	118	118	재단법인원 불교 대구경북 교구	대구 중구 남산동 677-180				
4	영천 시	야사 동	173- 17	대	47	47	이준희	영천시 상록3길 20-5				
5	영천 시	야사 동	173- 16	대	55	55	영천시	공				
6	영천 시	야사 동	174- 25	대	59	59	영천시	공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1	영천 시	야사 동	173 -14	화장실	벽돌 슬래브	11	m <sup>2</sup>	재단법인 원불교 대구경북 교구	대구 중구 남산동 677-180				
1-2	"	"	"	화단1	경계석	7	m	"	"				
1-3	"	"	"	화단2	메쉬 웬스	16	m	"	"				
1-4	"	"	"	화단	목조 가림막	7	m <sup>2</sup>	"	"				
1-5	"	"	"	대리석 계단	석재	1	식	"	"				
1-6	"	"	"	대문	철재	1	식	"	"				
1-7	"	"	"	담장	블록	50	m <sup>2</sup>	"	"				
1-8	"	"	"	감나무	20년	2	주	"	"				
1-9	"	"	"	회양목	-	2	주	"	"				

경산시 공고 제2020 - 400호

## 경산도시계획시설(소로2-41호선, 소로3-9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소로2-41호선, 소로3-9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사전 열람과 같은 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산시 옥산동 12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명 칭 : 도로(소로2-41호선, 소로3-96호선)

**3. 사업규모**

- 소로2-41호선 : L=261.0m, B=8.0m
- 소로3-96호선 : L= 67.0m, B=6.0m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6. 실시계획인가 사유**

-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조성하고 독창적 이미지 특화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0. 3. 12. ~ 2020. 3. 26.

(도보계재일로부터 15일간)

#### 10.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최종결정 (변경)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1	8	국지 도로	400	1호광장 (사정동 84-1)	중로1-4 (옥산동 125)	일반 도로	-	건교부 고시 제495호 (1970. 10.10)	경산시 고시 제2010- 86호 (2010.12. 20)	-
변경	소로	2	41	8	국지 도로	400	1호광장 (사정동 84-1)	중로1-4 (옥산동 125)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118m)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최종결정 (변경)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96	6	국지 도로	68	대로2- 11 (옥산동 117-14도)	소로2- 41 (옥산동 123-1)	일반 도로	-	경상북 도고시 제228호 (1971.7. 5)	경상북도 고시 제200호 (1987.1.7)	-
변 경	소 로	3	96	6	국지 도로	67	대로2- 11 (옥산동 117-14도)	소로2- 41 (옥산동 123-1)	일반 도로	-			연장 축소

■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 2-41	소로 2-41	▶ 일부구간 선형변경(118m 구간) • B = 8m • L = 400m	- 미 집행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도로 선 형변경
변경	소로 3-96	소로 3-96	▶ 연장축소 • B = 6m • L = 68 → 67m 감) 1m	- 소로 2-41호선 선형변경에 따 른 연장축소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용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64,182	3,097						
1	경산시 옥산동	123-1	철	18,544	189	국	국토교통부				
2	경산시 옥산동	123-10	철	2,087	17	국	경산시				
3	경산시 옥산동	123-6	철	1,665	1,450	국	경산시				
4	경산시 옥산동	123-3	답	77	77	국	경산시				
5	경산시 옥산동	123-2	답	1,400	108	우지혜 외1인	대구광역시 수성지 지범로 39길 12,102동403				
6	경산시 옥산동	123-7	철	241	47	국	경산시				
7	경산시 옥산동	123-4	답	11	11	국	경산시				
8	경산시 옥산동	123-5	답	78	78	국	경산시				
9	경산시 옥산동	120-7	대	130	130	국	경산시				
10	경산시 옥산동	693	구	483	20	국	농림축산 식품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경산시 옥산동	692	도	248	17	국	국토교통부				
12	경산시 옥산동	117-14	도	27	27	국	경산시				
13	경산시 옥산동	117-12	도	36	15	국	경산시				
14	경산시 옥산동	117-4	도	43	28	국	국토교통부				
15	경산시 옥산동	117-2	도	698	16	국	국토교통부				
16	경산시 사정동	305	도	581	3	국	국토교통부				
17	경산시 사정동	23	도	99	11	국	기획재정부				
18	경산시 옥산동	123-8	철	892	26	국	경산시				
19	경산시 사정동	84-28	철	1,207	7	국	경산시				
20	경산시 사정동	84-27	철	683	683	국	경산시				
21	경산시 사정동	84-10	철	34,952	137	국	국토교통부				

청송군 공고 제2020 - 226호

##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대덕공업사옆~강변도로)개설공사 외 9건』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청송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대덕공업사옆~강변도로)개설공사 외 9건]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청 송 군 수

##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건 명 : 청송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대덕공업사앞~강변도로)개설공사 외 9건

나.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비고
청송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대덕공업사앞~강변도로)개설공사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22-8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22-2	본선부 B=13.0m, L=70m, 가감속부B=8.75~27.52m, L=175m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3-7호선, 제일교회~망미정)개설공사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9-1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4-5	L=100m B=6m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선, 청송고등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45-6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29-3	L=120m B=8m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14호선, 장관빌라~안남하이츠)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56-9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24	L=284m B=6m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3호선, 유림회관앞)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96-9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17-16	L=130m B=8m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28호선, 현대목공소~국도34호선)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75-6번지~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56-1번지	L=89.2m, B=8.0m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17호선, 대구왕뽕찜식당~현대목공소)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78-4번지~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75-6번지	L=53.8m, B=6.0m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비고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진 10호선, 각산경로당~교도소 진입로)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503-10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503-80	L=103m, B=8.0m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37호선, 각산경로당~마을놀이터)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502-6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293-1	L=152m, B=6.0m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10호선, 파출소뒤~장안사)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23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31-15	L=220m, B=8m	

다. 사업목적 : 군민의 교통편의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마. 사업시행자 : 청송군수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년 3월 13일 ~ 2020년 4월 1일(14일간)-국공휴일제외

나. 장 소 :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도시계획담당

3. 의견제출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양식에 따라 열람기간내 제출

4. 편입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조서 참조

5. 사업시행지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 문의사항은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870-6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송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대덕공업사옆~강변도로)개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본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계								910			
1	청송	금곡	757-2	757-2	전	전	79	79	청송읍 월마리 451-32	이대형	
2	"	"	757-1	757-1	전	전	2,157	198	청송읍 월마리 451-32	이대형	
3	"	"	757-7	757-7	도	도	47	47		국(건설부)	
4	"	"	722-1	722-1	창	창	783	783		청송군	
5	"	"	722-6	722-6	대	대	343	343		청송군	
6	"	"	722-5	722-5	전	전	5	5		국(건설부)	
7	"	"	723-2	723-2	도	도	159	44		국(건설부)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계									
1	청송	금곡	757-1	소나무	R10, 40주	식	청송읍 월막리451-32	이대형	
2	청송	금곡	722-1	합석지붕	16.2×10.0	동	"	김혜령	
	"	"	"	컨테이너	3.0×8.0	동	"	"	
3	청송	금곡	722-6	조립식판넬	11.0×4.0	동	청송읍 월막3길20 장미아파트 A동302호	윤병한	
	"	"	"	합석지붕	11.2×7.0	동	"	"	
	"	"	"	마당포장	T=20.0cm, A=895㎡	식	"	"	
	"	"	"	울타리	H=2.0m, L=68m	식	"	"	

## □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3-7호선,제일교회~망미정)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본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22,410	743			
1	청송	월막	184-5		제	도	274	132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07	조상길	
2	"	"	184-6		제	도	36	3		청송군	
3	"	"	184-7		대	대	40	23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4	윤학용	
4	"	"	184-3		대	대	241	14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망미정3길 22	이광식	
5	"	"	182-2		천	도	56	44		미등기	
6	"	"	429-1		도	도	19,909	396		건설 교통부	
7	"	"	182-37		대	대	96	1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2-1	임영하	
8	"	"	182-30		대	전	202	29	경기 양산군 기장읍 죽성리 770	재단법인한국천 부교전도관유지 재단	
9	"	"	182-28		대	대	165	22	청송군 파천면 관리 749-1	김해욱	
10	"	"	182-26		대	대	165	20		환경부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본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1	"	"	182-9		도	도	569	3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2	일팔이 채권단	
12	"	"	182-24		대	대	165	19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2-24	남위수	
13	"	"	182-39		대	대	330	16	청송군 청송읍 망미정3길15	이금선	
14	"	"	182-7		대	대	162	2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67길 14-11(비산동)	마기수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리	지번					주 소	성 명	
계									
1	월막	31-15	대문	철제	1.0	식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4	윤학용	
	"	"	보일러실	슬라브	6.0	㎡	"	"	
	"	"	기름보일러		1.0	EA	"	"	
	"	"	장독대				"	"	
	"	"	계단	콘크리트	0.8	㎡	"	"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재지		비고
	리	지번					주소	성명	
	"	"	거실	기와	25.4	m <sup>2</sup>	"	"	
	"	"	방	기와	11.7	m <sup>2</sup>	"	"	
	"	"	방	기와	13.6	m <sup>2</sup>	"	"	
	"	"	방	기와	5.1	m <sup>2</sup>	"	"	
	"	"	욕실	기와	5.1	m <sup>2</sup>	"	"	
	"	"	담장	콘크리트	7.0	m <sup>2</sup>	"	"	
	"	"	담장	콘크리트	3.1	m <sup>2</sup>	"	"	
	"	"	담장	콘크리트	3.0	m <sup>2</sup>	"	"	
	"	"	바닥	콘크리트	4.7	m <sup>2</sup>	"	"	
	"	"	썸바이지	아크릴	5.5	m <sup>2</sup>	"	"	
2	"	182-37	방	슬레트	21.5	m <sup>2</sup>	청송군 청송읍 월마리 182-1	임영하	
	"	"	창고	슬레트	4.1	m <sup>2</sup>	"	"	
3	"	448-17	대문	철제	1.0	식	청송군 청송읍 월마리 망미정3길 22	이광식	
	"	"	담장	목제	4.0	m <sup>2</sup>	"	"	
	"	"	테크	목제	12.7	m <sup>2</sup>	"	"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주소	성명	
	"	"	가다	아크릴	4.8	m <sup>2</sup>	"	"	
4	"	182-30	문주	철제	1.0	식	경기 양산군 기장읍 죽성리 770	재단법인한국천 부교전도관유지 재단	
	"	"	석축	야면석	5.9	m <sup>2</sup>	"	"	
	"	"	석축	야면석	6.2	m <sup>2</sup>	"	"	
	"	"	담장	블록	1.3	m <sup>2</sup>	"	"	
	"	"	담장	블록	3.1	m <sup>2</sup>	"	"	
5	"	182-28	대문	목제	1.0	식	청송군 파천면 관리 749-1	김해옥	
	"	"	계단	콘크리트	2.2	m <sup>2</sup>			
	"	"	담장	콘크리트	13.1	m <sup>2</sup>			
	"	"	초화류		1.0	주			
6	"	182-24	주택	블록기와	38.5	m <sup>2</sup>	청송군 청송읍 일마리 182-24	남위수	
	"	"	창고	블록슬레이트	15.6	m <sup>2</sup>	"	"	
	"	"	수돗대	콘크리트	2.0	m <sup>2</sup>	"	"	
	"	"	담장	블록	37.3	m <sup>2</sup>	"	"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리	지번		구	적			주소	성명	
7	"	182-7	대문			1.0	식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67길 14-11(비산동)	마기수	
	"	"	창고	철근콘크리트		5.4	m <sup>2</sup>			
	"	"	담장	철근콘크리트		9.8	m <sup>2</sup>			

□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선, 청송고등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면적	주소	성명	
계							15,836	1,226			
1	청송	금곡	845-17		도	도	11	1		청송군	
2	"	"	845-6		도	도	231	230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40	청송농업협동조합	
3	"	"	845-9		전	대	30	30		윤명복	
4	"	"	839-3		도	도	202	202	대구동구신천동556-1 신천주공아파트 107-504	윤일균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면 입	주 소	성 명	
5	"	"	832-2		도	도	139	139	청송읍 금곡리 835	윤주병	
6	"	"	829-3		도	도	116	115		청송군	
7	"	"	845-18		도	도	33	2		청송군	
8	"	"	845-26		대	대	101	101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13	천순란	
9	"	"	1110-4		도	도	3	3		국 (건설부)	
10	"	"	845-8		대	대	2,753	6		청송군	
11	"	"	1110-1		도	도	11,271	138		국(기획 재정부)	
12	"	"	846-4		대	대	65	65	포항시 남구 지곡동 209-35 지이주택-6	윤장영	
13	"	"	832-3		전	대	182	1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46길 16, 202동 806호	윤종환	
14	"	"	831-1		전	도	255	42	안덕면 노래동 425	황용하	
15	"	"	829-6		학교 용지	학교 용지	444	23		청송군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리	지번					주소	성명	
계									
1	금곡	845-26	표지판	편지식	1.0	ea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13	친순란	
	"	"	담장	블록	34.0	m <sup>2</sup>	"	"	
	"	"	데크	목재	3.8	m <sup>2</sup>	"	"	
	"	"	담장	블록	23.4	m <sup>2</sup>	"	"	
	"	"	음나무	10년	1.0	주	"	"	
	"	"	잡목	10년	1.0	주	"	"	
2	"	1110-1	앵두나무	10년	1.0	주	포항시 남구 지곡동 209-35 지이주택-6	윤장영	
	"	"	초화류		8.0	주	"	"	
	"	"	음나무	10년	1.0	주	"	"	
	"	"	잡목	10년	2.0	주	"	"	
3	"	846-4	창고	철제	23.8	m <sup>2</sup>	포항시 남구 지곡동 209-35 지이주택-6	윤장영	
	"	"	담장	흙담	12.2	m <sup>2</sup>	"	"	
	"	"	화장실	블럭스레트	2.9	m <sup>2</sup>	"	"	
	"	"	창고	블럭스레트	8.1	m <sup>2</sup>	"	"	
	"	"	담장	블록	2.4	m <sup>2</sup>	"	"	
	"	"	주택	블럭기와	20.0	m <sup>2</sup>	"	"	
	"	"	주택	블럭기와	36.8	m <sup>2</sup>	"	"	

## □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14호선, 장관빌라~안남하이츠)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1,394	201			
1	진보	이촌	56-9		담		113	9		청송군	
2	"	"	56-12		도		254	143	안동시 태화동 631-1	주식회사 안남주택 건설	
3	"	"	12-2		대		266	23	경상북도 안동시 합전길 12, 101동 902호	강분홍	
4	"	"	736-1		도		761	26		건설부	
5	"	"	8-1		담		171	88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울로9길61, 202동 904호	박인환	
6	"	"	9		대		349	53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울로9길61, 202동 904호	박인환	
7	"	"	9-1		대		434	10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은천대로 2093-8, 가동 201호	박동광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8	"	"	7-2		대		449	32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3길 21	김노미	
9	"	"	4-9		전		229	10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2길 5	천성열	
10	"	"	17-3		도		870	46		경상북도 (교육감)	
11	"	"	5		전		3,027	69		청송군	
12	"	진안	736-1		구		5,181	17		농수산부	
13	"	"	485-2		답		76	37		청송군	
14	"	"	485-11		답		171	146		청송군	
15	"	"	484		답		381	178	45	유중현	
16	"	"	483		답		1,180	122	경상북도 안동시 새골2길 19-4, 101동 205호	신성균	
17	"	"	721-1		도		11,243	12		건설부	
18	"	"	521-1		답		91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9번길 6-3	김감배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9	"	"	520-3		답		175	100	안동시 태화동 180-6	주식회사 동진주택	
20	"	"	524		답		897	140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로 1-2	박옥명외 1인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 격	단위	수량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주 소	성 명	
1	진보	이촌	건물(가옥)	목조(기와)	㎡	36.00	경상북도 안동시 합진길 12, 101동 902호	강분홍	
2	진보	이촌	건물(화장실)	블록(스레트)	㎡	1.1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박인환	
			건물바다	콘크리트	㎡	1.10	남울로9길61, 202동 904호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3	진보	이촌	9-1	메쉬웬스	H=1.2m	m <sup>2</sup>	13.2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093-8, 가동 201호	박동광	
4	진보	이촌	7-2	건물 (창고)	경량철골조(합석)	m <sup>2</sup>	11.75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3길 21	김노미	
				건물 (창고)	경량철골조(합석)	m <sup>2</sup>	13.50			
				과실수	5년	주	1			
				바닥포장(건물)	콘크리트	m <sup>2</sup>	25.25			
				담장	H=1.5m	m <sup>2</sup>	3.75			
5	진보	이촌	4-9	철제대문	H=2.0m	m <sup>2</sup>	6.00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2길 5	천성열	
				건물 (창고)	경량철골조(합석)	m <sup>2</sup>	87.60			
				철제대문	H=1.2m	m <sup>2</sup>	7.20			
6	진보	이촌	5	담장	H=1.5m	m <sup>2</sup>	9.00			
				과실수	포도(5년)	주	12			
				과실수	다년생식물(5년)	주	24			
				철조망	H=1.5m	m <sup>2</sup>	14.25			

□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3호선, 유림회관앞)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계							16,165	1,097			
1	진보	진안	496-9		답		452	115		청송군	
2	"	"	498		답		46	36		청송군	
3	"	"	496-6		전		1,286	111		환경부	
4	"	"	499-10		대		297	1		명의인 없음	
5	"	"	721-1		도		11,243	83		건설부	
6	"	"	499-11		답		397	49	499-11	최학섭	
7	"	"	499-1		대		225	8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11길 9-15, 101동 706호(유천동, 진천역 화성파크리젠시)	최유정 외2인	
8	"	"	499-5		도		60	13	532	김진한 외1인	
9	"	"	499-8		도		59	60	안동시 태화동 240-8	김석훈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10	"	"	499-2		대		141	4		환경부	
11	"	"	500		대		360	34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4길 5, 가동 302호 (미성빌라)	배유복	
12	"	"	499-3		답		214	6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9길 16, 1동 511호(신암동, 동서아파트)	윤상목 외3인	
13	"	"	517-11		전		268	4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서4길 7	백춘란	
14	"	"	518-2		전		532	139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서4길 7	백춘란	
15	"	"	517-9		전		53	7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17	백춘란	
16	"	"	517-16		대		328	259		청송군	
17	"	"	517-17		대		82	17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17	백춘란	
18	"	"	517-7		전		122	2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17	백춘란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주소	성명	
1	진보	진안	500	건물(가옥)	㎡	8.84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4길 5, 가동 302호	배유복	
				담장	㎡	7.20			
				바닥포장(건물)	㎡	8.84			
				수목	주	2			
2	진보	진안	499-3	건물 (창고)	㎡	63.2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9길 16, 1동 511호	윤상묵 외3인	
				바닥포장(건물)	㎡	963.25			
				철제대문	㎡	4.50			
				목조(기와)	㎡	0.50			
3	진보	진안		건물(숯을대문)	㎡	11.55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17	백춘란	
				담장	㎡	14.25			
				수목	주	2			
				수목	주	2			
				수목	주	4			
				다년생식물		10년			

□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28호선, 현대목공소~국도34호선)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계									54		
1	진보	진안	456-1		답	답	1,497	29	진보면 진안리 550-58	이수준	
2	"	"	461-2		대	대	298	12	진보면 이촌리 16-5	류연배	
3	"	"	465-6		답	대	654	9	진보면 진안리 123-9	차수권	
4	"	"	466-4		답	대	99	4	진보면 진안리 123-9	차수권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 격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계									
1	진보	진안	461-5	답장	목조	㎡	청송읍 덕리255 진우하이츠 101-1104	윤람경	
2	진보	진안	466-4	건물	조적조슬래브	㎡	진보면 진안리 123-9	차수권	

□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17호선, 대구왕짚찜식당~현대목공소)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42			
1	진보	진안	478-4		답	답	301	42		환경부	

□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진10호선, 각산경로당~교도소진입로)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910			
1	진보	각산	504-83	504-83	구	구	909	30		한국농어 촌공사	
2	"	"	503-10	503-10	답	답	1,560	275	진보면 진성서길74, 백이동202(현대빌라)	정용익외 1인	
3	"	"	503-13	503-13	답	답	949	372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79-7	안상철	
4	"	"	503-80	503-80	진	진	308	308		청송군	

□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37호선, 각산경로당~마을늘이터)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면 입	주 소	성 명	
계								910			
1	진보	각산	502-6	502-6	대	대	106	60		국 (농수산부)	
2	"	"	502-7	502-7	답	답	450	104	울산동구 동부동 146현대하이아트맨션 201-804	김봉삼	
3	"	"	293-30	293-30	대	대	298	14	진보면 각산리 361	임영식	
4	"	"	293-31	293-31	대	대	301	93	진보면 각산아랫길 19-27	황명자외3 인	
5	"	"	293-29	293-31	대	대	317	85	진보면 진보로 264	양재국	
6	"	"	293-46	293-46	대	대	65	65	서울 광진구 능동로25길 16-302호	김정숙	
7	"	"	293-45	293-45	대	대	237	146	진보면 각산리 318	조범이	
8	"	"	293-35	293-35	도	도	202	33		국(건설부)	
9	"	"	293-5	293-5	대	대	821	90	진보면 각산리 2937	김병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0	"	"	293-4	293-4	대	대	340	196	진보면 광덕리 교정아파트 7-304	금태진	
11	"	"	293-2	293-2	대	대	499	31	진보면 각산리 293-34	안근배	
12	"	"	293-3	293-3	대	대	301	40	진보면 진안동길7길 26-1	김후남	
13	"	"	293-1	293-1	대	대	621	366	진보면 각산리 299	조병욱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 격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계									
1	진보	각산	502-7	컨테이너	500×3000	동	진보면 각산리 502-4	김봉삼	
	"	"	"	마당포장	T=10.0cm, A=23.6㎡	식	"	"	
2	진보	각산	293-30	조립식판넬	3000×3700	동	진보면 각산리 361	임영식	
	"	"	"	블록조	2000×1400	동	"	"	
	"	"	"	조립담장	H=.14,L=4	쉬	"	"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	"	"	마당포장	T=10.0cm, A=8.75㎡	식	"	"	
3	진보	각산	293-31	슬레이트창고	5200×4400	동	진보면 각산리 293-31	김철웅	
	"	"	"	조립식판넬	10,600×4500	동	"	"	
	"	"	"	조립담장	H=1.4,L3.1	식	"	"	
4	진보	각산	293-29	슬레이트창고	5200×4400	동	진보로 264	양재국	
	"	"	"	목조합석	10,200×5700	동	"	"	
	"	"	"	조립담장	H=1.4,L=8	취	"	"	
5	진보	각산	293-46	조립식판넬	8300×2800	동	서울 광진구 능동로25길16-302호	김정숙	
	"	"	"	비닐하우스	8900×3800	동	"	"	
	"	"	"	블록담장	H=1.5,L=4	취	"	"	
6	진보	각산	293-45	조립식판넬	7000×4500	동	진보면 각산리 318	조범이	
	"	"	"	블록담장	H=1.5,L=4	취	"	"	
	"	"	"	마당포장	T=10.0cm, A=123.5㎡	식	"	"	
	"	"	"	자두나무	12년생, 1주	식	"	"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	"	"	오가피나무	3년생, 2주	식	"	"	
	"	"	"	오가피나무	8년생, 1주	식	"	"	
7	진보	각산	293-35	목조합석	4100×4700	동	진보면 각산리 318	조범이	
8	진보	각산	293-4	목조슬레이트	7700×2700	동	진보면 광덕리 교정아파트 7-304	김태진	
	"	"	"	소나무	R10, 2주	식	"	"	
	"	"	"	읍나무	R30, 1주	식	"	"	
	"	"	"	감나무	R30, 1주	식	"	"	
	"	"	"	두릅나무		식	"	"	
	"	"	"	과실수	R20, 5주	식	"	"	
	"	"	"	과실수	R10, 1주	식	"	"	
	"	"	"	도라지	3년생	식	"	"	
9	진보	각산	293-3	조립식판넬	10,000×5100	동	진보면 진안동길7길 26-1	김후남	
10	진보	각산	293-2	자두나무	R25, 12주	식	진보면 각산리 293-2	황영숙	
	"	"	"	읍나무	R30, 1주	식	"	"	
	"	"	"	뽕나무	R5, 1주	식	"	"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	"	"	두릅나무		식	"	"	
	"	"	"	보리수나무	R30, 1주	식	"	"	
	"	"	"	포도넝쿨		식	"	"	
	"	"	"	조립담장	H=1.4, L=10	식	"	"	
11	진보	각산	293-1	블록합석기와	13,000×4200	동	진보면	각산리 293-1	조병욱
				목조슬레이트	7700×2800	동			
				목조슬레이트	6300×1700	동			
				목조슬레이트	3400×3100	동			
				목조슬레이트	4700×2000	동			
				목조슬레이트	2500×32000	동			
				목조슬레이트	2700×19000	동			
				마당포장	T=10.0cm, A=114.3m <sup>2</sup>	식			
				블록담장	H=1.5, L=4.1	식			
				조립담장	H=1.5, L=16.5	식			
				철대문	2400×1800	식			

## □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2-10호선, 파출소뒤~장안사)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440			
1	진보	진안	23-1		진	도	1,200	52		청송군	
2	"	"	23		진	잠	2,203	242		환경부	
3	"	"	550-4		대	대	268	146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윗길5-11	김영철	
4	진보	진안	550-79		대	대	170	155		청송군	
5	"	"	550-81		대	대	65	44		청송군	
6	"	"	550-2		진	전	601	179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윗길9	이수준	
7	"	"	550-38		도	도	255	48		청송군	
8	"	"	721-1		도	도	11,243	22		건설부	
9	"	"	33-12		진	전	352	124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윗길9-1	김선희	
10	"	"	32-11		진	전	165	154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5길27-3	신재희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면	리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1	"	"	32-14		진	대	200	20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32-9	신재희 외1인	
12	"	"	32-1		대	대	338	3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77-3	권순이	
13	"	"	32-9		대	대	199	6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5길 27-3	신재희	
14	"	"	32-12		대	대	281	106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125-1킴스빌리지 101동1316호	안주희	
15	"	"	31-8		대	대	221	27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37-1	권석희	
16	"	"	32-3		대	대	149	6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77-8	박순희	
17	"	"	31-9		도	도	292	26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34	이병훈 외9인	
18	"	"	31-15		진	대	738	246		청송군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계									
1	진보	진안	550-4	블록슬라브		동	진안동윗길5-11	김영철	
				조립식	10000x3000	동			
				블록슬라브	6000x2800	동			
				블록스레트	7200x4600	동			
				조립식	4600x1700	동			
				블록스레트	2400x2900	동			
				블록담장	H2000	m			
2	진보	진안	23	나무		주		환경부	
3	진보	진안	550-3	블록철기와		동	진안동윗길5-11	김영철	
				블록담장	H1600	m			
4	진보	진안	550-2	합석지붕	13000x5300	동	진안동윗길9	이수준	
				조립식창고	7000x4000	동			
				비닐하우스	20000x5000	동			
5	진보	진안	33-13	블록스레트	5000x2300	동	진안리 33-8	이재천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블록담장	H2000	M			
				문주	0.3x0.3x2.5	EA			
				철문		식			
				가시나무	20년생	주			
				엄나무	20년생	주			
6	진보	진안	32-7	블록담장	H2000	m		진안리 32-7	배상동
				문주	0.3x0.3x2.5	EA			
				철문		식			
7	진보	진안	32-11	비닐하우스	13000x6000	동		진안동5길27-3	신재희
8	진보	진안	32-9	벽돌기와	2S	동		진안동5길27-3	신재희
				합석치마		동			
9	진보	진안	32-1	블록철기와		동		진안리577-3	권순이
				블록스레트		동			
				블록담장	H1600	m			
10	진보	진안	32-12	블록스레트		동		경기 광주시 실촌읍 삼리125-1	안주희
				블록스레트	3200x2400	동		김스빌리지 101동1316호	

순번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블록담장	H2000	m			
				엄나무	10년생	주			
				감나무	30년생	주			
11	진보	진안	32-3	블록스레트		동	진안리577-8	박순희	
				블록담장	H2000	m			
12	진보	진안	31-8	블록담장	H2000	m	진안리37-1	권석희	
				문주	0.3x0.3x1.8	EA			
				철문		식			
				감나무	30년생	주			
				싸리나무	10년생	주			
13	진보	진안	31-15	블록조립식	5100x2800	동		청송군	
				블록담장	H2000	M			
				벗나무	10년생	주			
				나무	20년생	주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청송군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주군 공고 제2020-241호

## 군 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공람공고

군 계획시설인 성주읍 군계획도로(소로3-31호선, 소로2-5호선, 소로2-36호선, 소로3-3호선), 수륜면 군계획도로(소로3-19호선)개설공사, 가천면 군계획도로(소로3-28호선)개설공사, 벽진면 군계획도로(소로2-22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성 주 군 수

1. 공람(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 2. 군계획시설 사업 현황

사업의종류	사업의명칭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군계획시설	성주읍 군계획도로	시점 : 성주군 성주읍	L=132m	인가일 ~	

사업의종류	사업의명칭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사업(도로)	(소로3-31호선) 개설공사	예산리 515번지 중점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577-2번지	B=5.4m	2021.06.30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2-5호선) 개설공사	시점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98-5번지 중점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99-3번지	L=48m B=6m	인가일 ~ 2021.06.30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2-36호선) 개설공사	시점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45-1번지 중점 : 성주읍 성주읍 예산리 446-1번지	L=10m B=6m	인가일 ~ 2021.06.30	
군계획시설 사업(도로)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3-3호선) 개설공사	시점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370-10번지 중점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370-10번지	L=105m B=6m	인가일 ~ 2021.06.30	
	수륜면 군계획도로 (소로3-19호선) 개설공사	시점 : 성주군 수륜면 신평리 120-1번지 중점 : 성주군 수륜면 신평리 130-1번지	L=128m B=6m	인가일 ~ 2021.06.30	
	가천면 군계획도로 (소로3-28호선) 개설공사	시점 :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623-4번지 중점 :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620-2번지	L=140m B=6m	인가일 ~ 2021.06.30	
	벽진면 군계획도로 (소로2-22호선) 개설공사	시점 :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561-32번지 중점 :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715-1번지	L=175m B=6m	인가일 ~ 2021.06.30	

**3.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주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성주군청 도시건축과
- 의견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 내
- 의견제출처 : 성주군청 도시건축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6.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개발담당(☎054-930-6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성주읍 근계회도로(소로3-31호선) 개설공사[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8필지		887	887						
1	성주읍 예산리	529 - 6	진	248	248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군				
2	"	530 - 1	대	83	83	"	"				
3	"	569 - 2	대	170	170	"	"				
4	"	571 - 4	대	77	77	"	"				
5	"	578 - 1	대	171	171	"	"				
6	"	579 - 1	대	24	24	"	"				
7	"	577 - 2	진	111	111	"	"				
8	"	581 - 2	대	3	3	"	"				

## □ 성주읍 근계획도로(소로3-31호선) 개설공사[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	성주읍 예산리	569 - 2	대문	철재	1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129, 202호	박**					
2	성주읍 예산리	569 - 2	수도대 및 장독대	콘크리트	9㎡	“	박**					
3	성주읍 예산리	569 - 2	화단	-	1식	“	박**					
4	성주읍 예산리	569 - 2	담장	블록 (H=1.5m)	14m	“	박**					
5	성주읍 예산리	569 - 2	마당	콘크리트	75㎡	“	박**					
6	성주읍 예산리	569 - 2	문주 및 대문	각 1식	1식	“	박**					
7	성주읍 예산리	569 - 2	소나무	Ø25	1주	“	박**					
8	성주읍 예산리	569 - 2	소나무	Ø12	2주	“	박**					
9	성주읍 예산리	569 - 2	소나무	12년생	1주	“	박**					
10	성주읍 예산리	569 - 2	회양목	22년생	5주	“	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성주읍 예산리	569 - 2	매실나무	Ø20	1주	“	박**				
12	성주읍 예산리	569 - 2	포도나무	15년생	3주	“	박**				
13	성주읍 예산리	569 - 2	철쭉	15년생	3주	“	박**				
14	성주읍 예산리	569 - 2	가이스까 향나무	Ø27	3주	“	박**				
15	성주읍 예산리	569 - 2	목단	17년생	3주	“	박**				
16	성주읍 예산리	569 - 2	살구나무	Ø22	1주	“	박**				
17	성주읍 예산리	569 - 2	주목	Ø16	1주	“	박**				
18	성주읍 예산리	569 - 2	화백나무	Ø33	1주	“	박**				
19	성주읍 예산리	569 - 2	동백나무	10년생	2주	“	박**				
20	성주읍 예산리	569 - 2	측백	Ø13	1주	“	박**				
21	성주읍 예산리	569 - 2	모과나무	10년생	1주	“	박**				
22	성주읍 예산리	569 - 2	불도화	10년생	1주	“	박**				
23	성주읍 예산리	569 - 2	골담초	10년생	5군	“	박**				
24	성주읍 예산리	569 - 2	치자나무	10년생	1주	“	박**				

□ 성주읍 근계획도로(소로2-5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3필지		245	245						
1	성주읍 예산리	498 - 3	진	44	44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98-3	이**				
2	성주읍 예산리	498 - 6	진	2	2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98-3	이**				
3	성주읍 예산리	498 - 7	진	199	199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98-3	이**				

□ 성주읍 근계획도로(소로2-36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2필지		97	97						
1	성주 읍 예산리	445 - 4	진	90	90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89	이**				지분 (5/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2	성주 읍	446 - 3 전			7	7	성서삼성명가타운 219-100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36 월성이-편한세상 103-2401	이**			지분 (3/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28 서한화성타 107-1203	이**			지분 (2/10)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89 성서삼성명가타운 219-1002	이**			지분 (5/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36 월성이-편한세상 103-2401	이**			지분 (3/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28 서한화성타 107-1203	이**			지분 (2/10)	

□ 성주읍 근계획도로(소로3-3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필지		419	419						
1	성주읍 경산리	370 - 10	답	419	419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 수륜면 근계획도로(소로3-19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6필지		609	609						
1	수륜면 신파리	119 - 7	답	16	16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66-5	조**				
2	수륜면 신파리	120 - 1	임	289	289	성주군 수륜면 신파동 135	진****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3	수륜면	신파리	129 - 1	임	132	132	성주군 수륜면 신파동 135	진**** *****				
4	수륜면	신파리	130 - 1	임	110	110	성주군 수륜면 신파동 135	진**** *****				
5	수륜면	신파리	123 - 3	도	26	26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120	대**** *** *****				
6	수륜면	신파리	122 - 1	도	36	36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120	대**** *** *****				

□ 가천면 근계회도로(소로3-28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8필지		1,083	1,083							
1	가천면	창천리	412 - 8	답	4	4	대구시 서구 내당동 202-6	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2	가천면 창천리	623 - 4	답	143	143	내당시영아파트 12-208					
3	가천면 창천리	624 - 2	답	354	354	대구시 서구 내당동 202-6 내당시영아파트 12-208	이***				
4	가천면 창천리	625 - 13	답	115	115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5	가천면 창천리	625 - 11	답	64	64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6	가천면 창천리	625 - 9	답	177	177	대구시 중구 남산로4길 138	박***				
7	가천면 창천리	620 - 2	답	62	62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8	가천면 창천리	625 - 12	답	164	164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 벽진면 근계획도로(소로2-22호선) 개설공사

일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4필지		728	728							
1	벽진면 수촌리	715 - 1	답	341	341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2	벽진면 수촌리	561 - 33	답	143	143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3	벽진면 수촌리	561 - 32	답	209	209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3200	성**					
4	벽진면 수촌리	558 - 2	답	35	35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729	김**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 - 79호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장(구미권지사)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83-2번지 외 45필지 일원 면적 : 1,281㎡(일시 8,980㎡)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적 : 상수도관로 매설 시설개요 : 관로복선화 D=600mm, L=2.24km 관로개량 작업구 10개소 D=1,200mm
점용 기간	2017년 06월 26일부터 2022년 06월 25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8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기간연장 고시문**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3.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한국산업 대표 김*자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2355-11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1051-13번지 외 2필지 일원 면적 : 784m <sup>2</sup>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골재채취 진·출입로 설치 시설개요 : 진출입로 L=196, A=784m <sup>2</sup>
점용 기간	당초 :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변경 : 2020년 05월 16일까지 2021년 3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3.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청소행정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명륜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300번지 일원 면적 : 205㎡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음악분수공원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시설개요 : 이동식화장실 1개소 교체 상수관로(D16) L=160m, 오수관로(D150) L=40m
점용 기간	2020년 3월 9일부터 2025년 3월 8일까지



기 타

공 고

안동소방서 공고 제2020-2호

##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안 동 소 방 서 장

1. 건 명 :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0. 3. 12.(목) ~ 2020. 4. 6.(월)

##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구분	위반자	위반장소	송달장소(주소)	의견제출 기한	공고사유
1	이*선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78길 45,108동104호 (범어동,이편한세상범어)	2020.4.6. (월)	수취인 불명
2	김*희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경북 영주시 대동로31번길 36-3, 301동 401호 (가흥동, 동신평크뷰)	2020.4.6. (월)	이사불명
3	나*식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경북 안동시 맑은샘3길 21(천리동)	2020.4.6. (월)	폐문부재
4	변*태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13길 49-4(대명동)	2020.4.6. (월)	수취인 불명
5	서*희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경북 안동시 송천2길 72-25, 씨동 302호 (송천동)	2020.4.6. (월)	폐문부재
6	이*숙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경북 안동시 옥서1길 25, 712동 606 (옥동, 옥동주공7아파트)	2020.4.6. (월)	폐문부재
7	신*숙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경북 경산시 경청로219길 1-11(백천동)	2020.4.6. (월)	폐문부재
8	김*령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591, 201동 1703호 (침산동, 침산동코오롱하늘채)	2020.4.6. (월)	수취인 불명
9	정*옥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302호(당북동)	2020.4.6. (월)	폐문부재
10	강*모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당북동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37길 24, 105동 1001호 (침산동, 침산2차화성타운)	2020.4.6. (월)	수취인 불명

\* 송달 효력 : 2020. 3. 12. ~ 3. 25. (14일) / 의견제출기한 : 3. 26.~ 4. 6. (12일)

5. 위반내용 : 소화펌프 고장난 상태 방치

6.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 산출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2. 개별기준 가. 2). 가)

8. 과 태 료 : 금2,000,000원(자진납부금액 : 금1,600,000원)

### 9. 참고사항

-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 대상자께서는 2020. 4. 6.까지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방문,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을 감경하여 부과됩니다.
- 본 과태료는 납입고지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모든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범위에서 감경 받

을 수 있습니다

○ 본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과태료 납기일까지 안동소방서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와 관련하여 센트럴64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당북동) 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대표하여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납부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054-850-6642)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  **세상**